

# 檢 討 報 告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입장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기획재정국 세무2과 소관

日 時 : 2009. 11 . 26 ( 목 )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專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우리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한도·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3조1항(지급기준) 6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가목에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목에서는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일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5,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일 때는 250만원 더하기 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일 때는 400만원 더하기 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로 하였고 예외 규정을 두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음

(2) 안 제3조2(지급한도)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통고 처분, 고발, 탈세정보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로 최대 지급 한도를 두었음

(3) 안 제4조1항에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의 목적을 “미수액 징수”에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

(4)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하도록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보완

(5) 부칙 4개조항을 신설하여 제1조에서는 부칙 제4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중 제6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목 명칭 변경 과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지방세 납세 증명”을 삭제한다 라는 항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제14조제2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와 같은 부칙 제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음

부칙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와 부칙제3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부터 적용한다”라고 예외규정을 두었음

(6) 전 조항에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전반적으로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일반 주민들이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 개정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 하므로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후속조치로서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도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